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8. 25 선고 2018가단58061(본소), 2020가단54321(반소)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보석

변론 종결2020. 8. 11.

판결 선고2020. 8.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6,360,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당진시 D 임야 1802m² 지상에 주유소를 건축면적 186.30m²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하여 대금 3억 8,06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8. 9. 2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11. 최초 설계도면에 누락되었던 저유소 탱크 위치 등이 포함된 1차 설계변경도면, 2018. 9. 18.에는 주1동 사무실 및 저유소 탱크의 위치를 일부 변경한 2차 설계변경도면, 2018. 10. 25.에는 기존의 주1동 사무실, 부1동 사무실(캐노피), 저유소 탱크 위치 및 규격과 설치내역(격실)을 전면 변경한 최종설계변경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애초 길이 107m에 면적 377m²로 약정되었던 보강토공사를 54m² 증가된 431m²로 완공하였고, 그 후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8. 11. 23.경 계약금액 조정 없이는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6.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하므로 나머지 공사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준공예정일인 2018. 12. 31.까지 공사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이 사공 공사계약 제34조에 의거 2018. 12. 13.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본소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부당한 공사내용변경 및 대금증액 요구와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920만 원에서 보강토 공사비를 제외한 2,000만 원과 2018. 10. 31.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2018. 12. 13.까지의 지체상금 16,365,800원의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일부청구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반소청구의 요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공사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공사진행을 요구한 원고의 해제요구로 인해 해제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완공한 보강토공사비용과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보강토공사비용 7,920만 원에서 지급된 계약금 6,92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하였을 이윤 6,360,189원의 합계 16,360,189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본소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구에 응하여 협의할 의무있는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에게 기존의 공사대금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진행을 요구한 사실, ②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토 공사를 마친 피고가 공사금액의 변경 없이는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반환 및 지체상금의 본소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에 대한 판단

1)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응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이 기존 3억 4,600만 원(부가세 미포함)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600만 원(부가세 미포함)으로 기존 공사대금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된 사실, 세부적으로는 옹벽설치비용이 m당 단가 125,000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m당 930,000원으로 상향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견적금액은 단순히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가까워 이를 거부한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의 반소청구 중 시공을 완료한 보강토공사 부분의 정산문제는 별론, 기존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윤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토공사를 완료하여 그로 인한 비용이 예정보다 늘어나 7,920만 원 상당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6,9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강토공사대금의 정산으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금액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로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제 내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피고가 얻었을 이윤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동철